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2956호

시행일자 2026. 3. 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

나. 대의협 제821-07067호(2023. 9. 5.) 및 대의협 제821-12554호(2023. 12. 27.)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」

다. 복지부 공고 제2025-946호(2025. 12. 26.)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3. 상기 근거와 관련 병원급은 2023년 9월, 의원급은 2024년 3월 진료 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,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(의료법 제92조)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 : `26. 2. 28. 기준 개설·운영 중인 병·의원급 의료기관

※ `26. 2.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, `26. 3. 중 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

나. 내용 : `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 1,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

※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 [별표1] 보고항목, [별표2]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

다. 제출기간 : `26. 4. 13.(월) ~ 6. 12.(금)…9주, 중별 권고기간 운영[안내문 참조]

- 의원(의과) 제출 권고 기간 : 2026. 4. 13.(월) ~ 5. 10.(일)

라. 제출처 : 요양기관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 ▶ 비급여보고

마. 문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☎1577-1000, 비급여관리실 ☎033-736-2040

바. 참고자료 : 요양기관정보마당▶ 공지사항▶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

	비급여 보고	비급여 공개
항목	- 26년도 비급여 보고항목은 총 1,411개 (보고항목 658개, 가격공개 753항목) ※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-946호 (2025. 12. 26.) [별표1] 확인 가능	-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총 753항목 ※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-946호 (2025. 12. 26.) [별표1] 확인 가능
보고/공개 내역	-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, 일련번호, 보험자 중별구분 등 2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 '요양기관정보마당' → 「비급여보고 보고서 식 작성요령 및 예시」를 참고	-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가격공개항목의 코드, 명칭, 단가 등
비고	- 변경내용 : `25년 1,251 항목 → `26년 1,411항목 - 세부안내 :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세부내용 게시	

#붙임

- 1)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(TF)-103(2026. 2. 27.) 공문 1부.
- 2) `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문 1부. 끝.

#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# 수신처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, 대한공중보건협회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